

부산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7가단17111(본소), 2017가단32966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원고,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정우

반소피고B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준

피고D

변론 종결2020. 1. 17.

판결 선고2020. 4. 2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A에게,
가. 피고 D은 67,149,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는 21,294,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5은 원고(반소피고) A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의 가항 및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1. 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자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소유자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1,344,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 A, 반소피고 B(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공동하여 피고 회사에게 79,139,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고, 피고 회사는 2014. 9. 30. 설립되어 2016. 12. 26. 주주총회결의로 해산되었으며, 해산 당시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반소피고 B, 원고 A의 삼촌인 E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는 2014. 9. 17. 부산 서구 F 구내 검역창고에 관하여 검역창고 보관관리인 지정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 A는 2014. 9. 24. 피고 D를 보관관리인으로 하여 위 검역창고 보관관리인 지정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낙찰받았다.

다. 원고 A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보세창고 허가를 받기 위하여 2014. 9. 30. 지인들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후 피고 D를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 및 지분율은 반소피고 B(20%), G(40%), E(20%), 피고 D(20%)이었고, 이후 G의 지분은 피고 D의 처형인 H에게, E의 지분은 원고 A의 형인 I에게 각 양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J단체, K은행, L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자 명의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주위적으로, 원고 A가 피고 회사를 설립한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청산절차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자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A가 관련 사건(창원지방법원 2016고단895호)에서 증인으로 나와 '자신과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실운영주'라고 진술한 점, 피고 D이 위 관련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원고 A가 실제 자본금 1억 5,000만 원을 전액 투자하였고, 처음에는 원고 A가 60%, 자신이 40% 지분을 가졌다가 2015. 1.경 원고 A가 40%, 자신이 60%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 회사 명의의 통장에서 M 주식회사에 2014. 11. 27. 자동차리스보증금 1,668만 원이 지급되었고, 2015. 1.경부터 2017. 1.경까지 매월 리스료가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와 피고

D의 동업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자동차 역시 피고 회사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 A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구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자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면 원고 A가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2017. 3.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리스대금 합계 18,491,000원, 차량이전등록비 1,969,130원, 자동차세 884,200원 도합 21,344,33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2017.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리스대금 합계 18,491,000원, 자동차이전등록비 1,919,530원, 자동차세 884,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그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 합계 21,294,730원(18,491,000원 + 1,919,530원 + 884,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1.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주장 피고 D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직에 있으면서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출금하거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된 돈 10,000,000원을 반환받아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67,872,858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지분 40%에 해당하는 67,149,143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1) .

(2) 판단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2016. 12. 26. 주주총회결의로 해산된 사실, 원고 A와 피고 D의 지분 분배비율이 40:60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 D이 2019. 10. 30.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63)에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 회사의 금원 합계 167,872,858원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D은 위 공소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D은 원고 A에게 피고 회사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167,872,858원) 중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67,149,143원(167,872,858원 × 40%)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7.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으므로 공동하여 피고 회사가 2015. 6.경부터 2016. 12.경까지 반소피고 B에게 지급한 급여지급액 합계 79,139,38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사건에서는 '원고 A, 피고 D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G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0. ~ 12.경 급여를 지급받도록 하여 피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것일 뿐 급여지급시기, 상대방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와는 무관한 점, ② 피고 회사가 반소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는 위 각 금원은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지분권자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회사의 지분권자인 피고 D도 매월 원고 A와 비슷한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위 주장과 같이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동기

별지

1) 원고 A는 피고 D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A의 위 주장을 잔여재산분배청구로 선행하여 판단하기로 한다.